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통일교육원에 스마트교육 운영을 위한 인력 1명(6급 1명)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1. 2. 25,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정원 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통일부령 제 호

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7의5 중 총계 “68”을 “69”로 하고, 1. 공무원 계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 및 일반직 계 “67”을 각각 “68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55”를 “56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7의5]

통일교육원 공무원 정원표(제22조제10항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정안	증	감
총	계	.	.	.	.	.	.
1.	공무원		68	69		+1	
계 (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			67	68		+1	
일반직	계		67	68		+1	
.			.	.			
.			.	.			
3급	또는 4급 이하		55	56		+1	
.			.	.			
.			.	.			